
도-시·군 현안 점검 및 정책 협력을 위한 공공갈등 합동 워크숍

도·시·군 현안 점검 및 정책 협력을 위한 공공갈등 관계관 합동 워크숍

I. 워크숍 개요

☐ 목 적

- 최근 증가 추세인 공공갈등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도·시·군 협력 강화
- 도내 갈등 현안 점검, 갈등관리 정책 공유 및 광역 협력 방안 도출
- 도·시·군 공공갈등 현안 점검 및 개선·협력 방안 토의

☐ 추진방향

- 공공갈등 예방 및 대응 시책 소개 및 역량 강화 교육
- 도·시·군 공공갈등 현안 점검 및 개선·협력 방안 토의

☐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9. 7. 25.(목) 11:00 ~ 15:00
- 장 소 : 리솜스파캐슬 덕산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3로 45-7)
- 대 상 : 40명
 - 도 공동체정책관실 : 5명
 - 시·군 공공갈등 관리 담당자 및 현안 담당 관계자 : 30명
 - 충남연구원 : 5명
- 주최·주관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II. 주요 행사계획 및 일정

□ 주요 행사계획

- 2019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설명 (도 갈등정책팀)
- 갈등관리전문기구 사업계획 설명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 토론 및 발표
 - 시·군 공공갈등 현안 집중 토론 및 의견수렴

□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1:00		◦ 등록 및 접수	
11:00 ~ 11:05	5 '	◦ 개회(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11:05 ~ 11:10	5 '	◦ 인사말씀	구 상 공동체정책관
11:10 ~ 11:25	15 '	◦ 정책연찬 I - 2019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김응규 갈등정책팀장
11:25 ~ 12:00	35 '	◦ 정책연찬 II - 갈등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유삼형 주무관 갈등정책팀
12:00 ~ 13:00	60 '	◦ 오 찬	
13:00 ~ 13:30	30 '	◦ 정책연찬 III -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협력방안	충남연구원 장 창 석
13:30 ~ 14:15	45 '	◦ 시·군별 현안점검 및 개선 협력 방안 학습	
14:15 ~ 15:00	45 '	◦ 사례 공유를 통한 시·군별 협력 방안 학습	



목 차



I. 2019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1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김응규 갈등정책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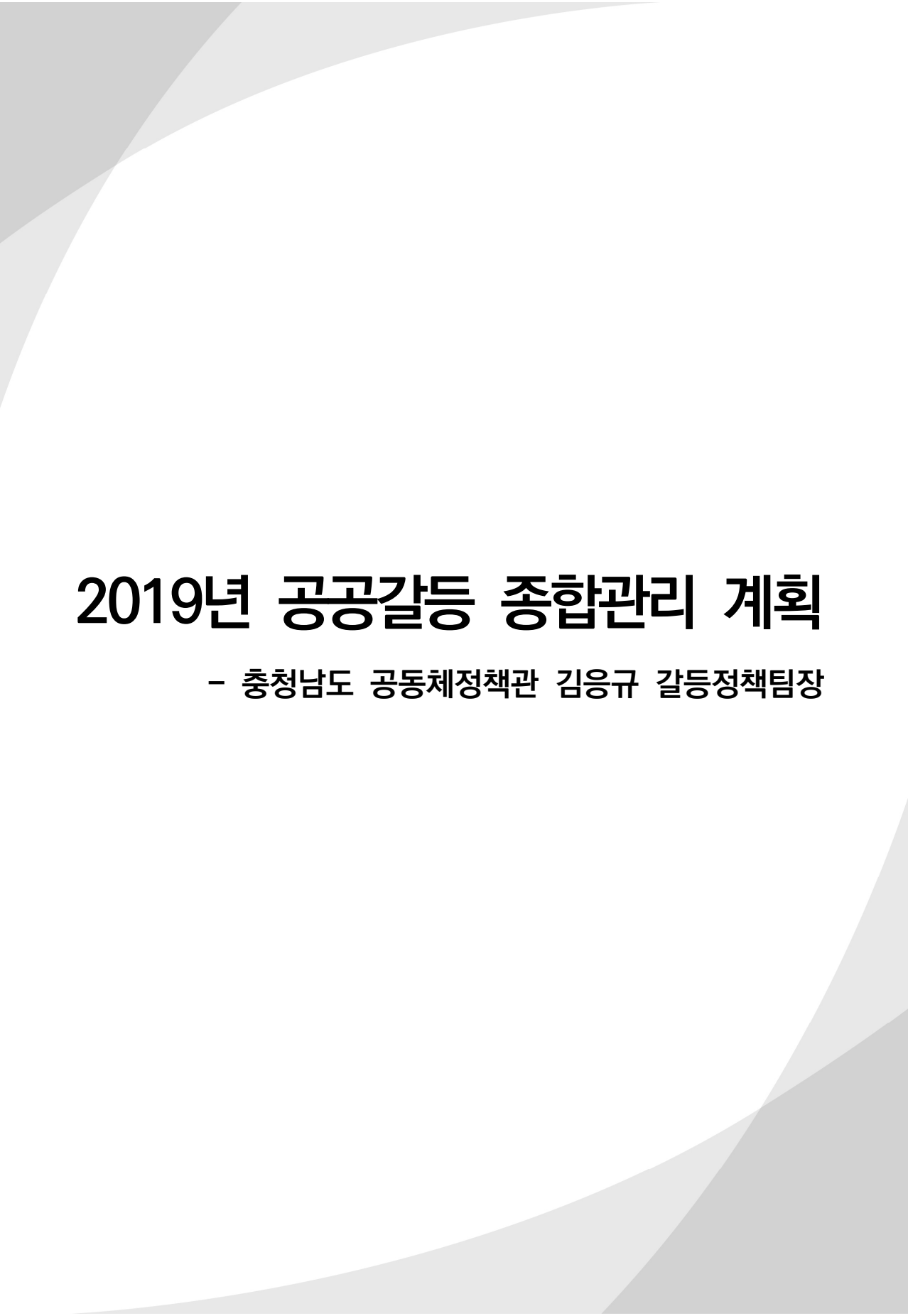
II. 갈등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11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갈등정책팀 유삼형 주무관

III.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협력방안 31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문연구원

IV. 시·군별 현안점검 및 개선 협력 방안 학습 47



2019년 공공갈등 종합관리 계획

-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김응규 갈등정책팀장

I. 추진방향 및 계획

목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로 더 행복한 충남 실현
----	-------------------------------



전략	○ 공공갈등 선제적·사전적 예방 강화 ○ 적극적인 갈등 조정으로 갈등 해소·해결
----	---



추진 방향	○ '19년을 공공갈등 해결 '원년의 해'로 갈등해소에 전 행정력 집중 ○ 공공정책 추진과정의 도정 신뢰 향상을 위한 예방행정 확립 ○ 민·관 협력 강화, 현장 중심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해소 주력
----------	---



추진 과제	①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추진 ② 갈등경보제 운영 ③ 현안부서(시·군)와 협업 및 민·관 역량교육 강화 ④ 공공갈등 민관 현장 컨설팅 운영 ⑤ 장기 미해결 공공갈등 해소 방안 마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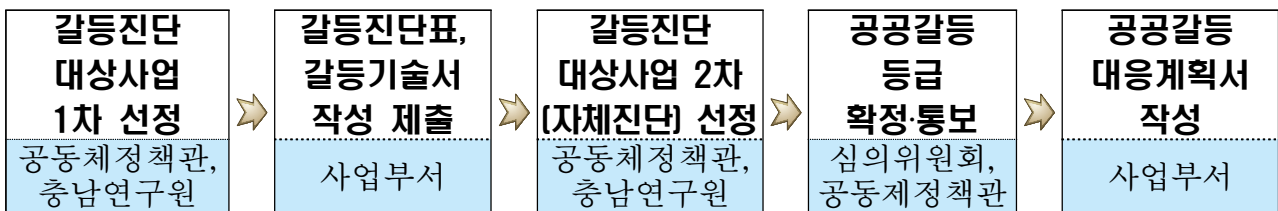
II. 주요업무 추진상황

①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추진

- ◆ 도정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선제적 갈등 대응 방안 마련
- ◆ 적극적 사전(事前)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행정 신뢰 향상
- ➡ 주요사업 사전 갈등진단으로 선제적 갈등 예방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진단 대상 : ① 道 추진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및 주요 승인 사업 ② 50억 이상 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중기재정 계획 사업 ③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정 및 개정 사안 등
- 진단 절차



- 결정 방법 (등급 구분 및 성격)
 - 1등급(중점관리) : 道 차원의 접근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 2등급(부서자체관리) : 공동체정책관의 협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업
 - 3등급 :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
- ※ 진단표(참고2) 12개 항목 중 9개 이상 1등급, 6개 이상 2등급, 6개 미만 3등급
- 갈등 사전 대응계획 수립 : 1등급으로 결정된 사업 등 갈등 영향분석(충남연구원)을 통해 대응계획 마련

□ 추진상황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최종 3개 사업 선정(6. 4.)
 - (중점관리)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 (부서자체관리) 공주시 정안면 채석장 개발, 부여군 외산면 토석채취장 운영
- 갈등영향분석 의뢰(7. 18.)
 - 대상사업 : 「충청남도 축산시설 악취 갈등 대응방안 마련」,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 향후계획

- 갈등영향분석 대상사업 대응계획 수립 및 결과 공유(12월)

② 갈등경보제 운영

- ◆ 민원실태, 언론동향 등을 파악하여 갈등 징후 탐색 체계 구축
- ◆ 갈등 징후 탐색을 위한 갈등 경보 기준 마련
- ➡ 갈등 초기 해결을 위한 행정 내부 협조(협업) 및 민관 협력 강화

□ 사업개요

○ 공공갈등 패턴 분석

- (초기) 일반민원 ⇒ (증폭) 집단시위, 단체·위원회로 확대, 고충민원
- 민원 접수 및 언론 보도 증가 ⇒ 특정 패턴(키워드) 형성

○ 업무 흐름도

- ① 조사(모니터링) : 고충민원, 언론 및 시위 동향 파악
- ② 분석(상황 판단) : 민원 확대 가능성 등 갈등경보 T/F팀 심의를 거쳐 대상 선정
- ③ 대응(3단계 대응) : 관심단계 → 예비경보 → 갈등경보

○ 단계별 대응 방안(3단계)

- 관심단계 : 갈등예방 활동 수행
(갈등정책팀) 해당 부서에 메일링(전자우편 등) 알림
(사업부서) 민원 내용 분석 및 갈등해소 방안 준비
- 예비경보 : 갈등요인 제거 및 갈등 방지 대책 수립
(갈등정책팀) 해당 부서에 공문 통지(갈등 확산 분석 및 조정제도 안내 등)
(사업부서) 민원당사자 면담 및 주민 설명 등 해결 방안 마련
- 갈등경보 : 갈등조정 활동 수행
(갈등정책팀) 갈등경보T/F팀 운영, 대응방향 검토 및 대안 도출, 갈등조정 지원(조정협의회 구성, 전문가 지원)
(사업부서) 갈등 대응방향 마련 및 유관기관간 대응·협조 체계 강화

□ 추진상황

- 관심단계 발령: 「보령(원산도)~태안(영목항) 간 해상교량 명칭 제정」(5.1.)
 - 사업부서(토지관리과)에 갈등 동향 알림(갈등 대응 방안 권고 등 협력 유지)

□ 협조사항

- 공공갈등 발생 우려시,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

③ 현안부서(시·군)와 협업 및 민·관 역량교육 강화

- ◆ 관련부서 및 시·군 간 협력부진 및 갈등 상황 회피 분위기 극복
- ➡ 갈등 발생을 문제 삼지 않고, 갈등 대처에 적극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갈등 관련 정보(동향, 대응방안 등) 및 교육연수 기회 제공
-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및 갈등관리 기법 공유 등을 통한 갈등 대응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대응방안 모색
- 공공갈등 관리카드 작성 운영 시 실무부서와 협업 강화

○ 추진일정

역량교육 수립 (‘19. 3.)

- 도, 시·군 공무원, 지방공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
- 갈등관리 역량 강화, 실무관련 지식 공유 가능한 교육 설계
- 갈등 상황에 대한 맞춤형 교육 추진

도, 시군 공공갈등 담당관 합동 워크숍 (‘19. 4.)

- 때 · 곳 : ’19. 4. 24 ~ 26.(2박 3일) / 제주도
- 인 원 : 40명 (도, 시·군 관계관)
- 주 관 : 갈등관리전문기구(충남연구원)
- 내 용 : 전문가 특강, 현안문제 발표 및 토론, 협력강화 방안, 우수 사례 연구 등

공공갈등 관리카드 운영 (연중)

- 행정안전부 제공 서식 활용 관리 중 (’19. 7월 현재 21건)
- 공공갈등 관리카드 현안부서와 공동 작성 추진
- ※ 정보 공유 및 적시 대응

갈등영향분석 (‘19. 7 ~ 12.)

- 공공갈등 사전예방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 갈등관리전문기구(충남연구원) 수행(’19. 7. ~ 12.)
 - 갈등영향분석 보고서 작성 및 대안 제시 등
- ⇒ 사실관계 파악을 통한 갈등예방 및 합의 형성절차 설계 제공

□ 추진상황

- 도-시군 공공갈등관리 관계관 합동 워크숍 개최(4. 24. ~ 26.)
 - 36명 / 제주도 / 정책연찬, 전문가 특강, 가축사육 경계지 종합토론 등
- 공공갈등 인식전환 및 역량강화 교육[금산군(2. 15.), 부여군(6. 21.)]
- 도, 시군 관계관 2차 합동 워크숍(7. 25.)

□ 협조사항

- 시·군 공공갈등 역량강화 교육 등 적극적인 참여

4 공공갈등 민·관 현장컨설팅 운영

- ◆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통해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
- ◆ 공공갈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갈등업무 담당자의 피로감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과 합의 형성 촉진을 위한 현장컨설팅 실시
 - ※ 공공갈등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자문 기능 강화
- 쟁점사항을 사전에 파악, 민원 최소화 및 정책집행 실효성 확보

○ 컨설팅 표준 절차

[1단계] 대상사업 선정

- 도, 시·군 정책사업 등 공공갈등 현장컨설팅 대상 선정(수시)

[2단계] 갈등 요인 분석

- 공공갈등 위험요인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갈등정책팀)
 - 해당 시·군, 충남연구원 전문가 등과 사전 검토 회의

[3단계] 현장컨설팅 실시

- 중립적인 제3자의 갈등조정 전문가 등 현장컨설팅 실시
 - 갈등 유형에 따라 조정 전문가를 선정하여 대화를 통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 지원

[4단계] 갈등해소 방안 수립

- 현장컨설팅을 통한 공공갈등 해소방안 수립
 - 갈등조정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사안별 조정협의회 구성·운영으로 갈등해소 방안 마련

[5단계] 모니터링 실시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갈등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신속한 사후관리 및 시의적절한 갈등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상황

- 「부여군 생활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현장 컨설팅 실시(6. 14.)
 - 참석자 9명(전문가3, 도2, 부여군4) / 공공갈등 상황분석 및 해소방안 제시
- 「부여군 생활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설치」 갈등영향분석 의뢰(7. 18.)

□ 협조사항

- 공공갈등 조정·협의를 필요한 경우 현장 컨설팅 요청

⑤ 장기 미해결 공공갈등 해소 방안 마련

- ◆ 갈등 발생을 문제 삼지 않고, 갈등 대응에 적극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
- ◆ '19년 공공갈등 해결 '원년의 해'로 삼아 갈등해소에 전 행정력 집중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및 갈등관리 기법 공유 등을 통한 갈등 대응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대응방안 모색
- 관련부서, 시·군 간 협력으로 구체적,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
- 갈등관리 대상 현안 보고 및 관리카드 작성·운영으로 장기 미해결 공공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소 추진

○ 추진 방법 : 공공갈등 토론회 개최

- 시 기 : 분기별
- 참석자 : 갈등부서 실·국장, 갈등관리심의위원 등(도지사 주재)
- 절차 : 실·국별 갈등 진행상황 및 대응계획 보고 → 갈등관리 심의 위원 등 자문을 통하여 사안별 대응계획 마련
- 대 상 : 21건 [중점과제(4건), 부서자체관리(16건), 도지사 관심사항(1건)]

< 중점관리 >

- ①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② 가축사육제한 인접 시·군간 축사 경계지역 갈등 예방
- ③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④ 내포 천연가스열병합발전소 추진

< 부서자체관리 >

- ① 안면도관광지 개발 ② 청양강정리 석면·폐기물문제 ③ 장항선 개량2단계 건설사업 등

< 도지사 관심사항 > 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 조정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관리대상 조정 심의 결정('19. 6. 4)

□ 추진상황

- 제1차 토론회(2. 13.), 제2차 토론회(6. 27.) 개최
- 제3차 토론회 개최(10. 22.) 예정

□ 협조사항

- 3차 토론회 시·군 사업담당 과장 참석 및 갈등해소 우수사례 발표(서산시)

참고 1

장기 미해결 공공갈등 대응계획

구분	갈 등 명	대응계획	비고
중점관리 (4)	①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 보령 공군사격장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운영 중(19.3.6.~)으로 * '환경피해 갈등'을 상생협력 관계로 전환 -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생협력 사업 발굴 추진	-
	②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 'SRF → LNG + H ₂ 연료전지' 사업 계획 변경(19.4.) 후 산업부 등 협조하여 지속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 정상 추진 - 주민측 반대민원 주시 및 H ₂ 연료전지 안전성 정보 제공	-
	③ 가축사육제한 인접 사군 간 축사 경계지역 지정	- 사군과 협의하여 조례 정비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	-
	④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 시설 설치	- 소각시설 설치 반대 주민과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 -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	-
부서 자체 관리 (17)	① 예산 대술 채석단지 지정	- 채석단지 지정되어 법적인 절차는 완료, 채석작업 중으로 -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예산군을 통해 수시 지도·점검 계획으로 공공갈등 해소 전망	-
	② 공주시 정안면 채석장 개발	- 공주, 도는 행정절차 이행시 지역 주민 의견 반영 계획	-
	③ 부여군 외산면 토석채취장 운영	- 부여군의 토석채취 기간연장 불허로 사업자와 소송 중 -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계획	-
	④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사업	- 사업자의 사업 부지 변경 결정으로 갈등 해소 전망 - 사업자 사업부지 변경 승인요청 시 주민동의를 포함하는 인허가 완료 여부 확인 계획	-
	⑤ 안면도 관광지 개발	- 10월 중 3지구 본 계약 체결 시 갈등 해소 전망	-
	⑥ 서산당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 공론화를 통해 소각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긍정 여론 형성 되어 갈등 해소 전망, 행정절차 이행시 주민의견 지속 반영	-
	⑦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 사업장 이전 등 주민 의견 반영하여 청양군과 함께 협의추진	-
	⑧ 예산 대술면 폐기물매립장 설치	- 사업자의 행정소송 제기때 따른 소송 대응 승소 노력 -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인허가 등 단계적 행정절차 대응	-
	⑨ 금산 불산공장 이전	- 공장이전은 경제적 이유, 불산공장 재가동은 주민 반대로 불가 전망 - 주민·사업자 간 민사 소송 종료 시 공공갈등 해소 전망	-
	⑩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	- 송전선로 통과지역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	-
	⑪ 345kv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 건설	- 적극적 중재자 역할 및 요구사항 반영 등 해결방안 모색	-
	⑫ 장항선 개량2단계 건설사업	- 기존선 활용(안) 추진으로 자연발생석면 피해 우려 해소 - 환경영향평가 등 이행 후 조속 추진되도록 지속적 노력	-
	⑬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 노선	- 임존성 문화재 현상변경 동향 파악 등 적의 대응 - 국토부, 예산군, (주)포스코건설과 협업하여 갈등 해소 노력	-
	⑭ 논산 태화산업단지 조성	-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쟁점사항 없음 - 선고(19. 7. 10. 예정) 결과에 따라 민원 대응 및 법적 처리	-
	⑮ 아산 인주산업단지 조성	- '19. 12월 토지보상 및 착공 계획으로 보상 관련 갈등 예상 -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민원사항 파악하여 해소방안 강구	-
	⑯ 서천~군산 간 공동조업 구역	- 전라북도(군산시)와 상생협력 행정협력 방안 제시 등 노력	-
	⑰ 「천안아산역」 택시 사업구역	- 택시 사업구역 갈등 해소보다 시민교통편의 증진 관점 접근 계획	-

참고 2

공공갈등 진단표

● 사 업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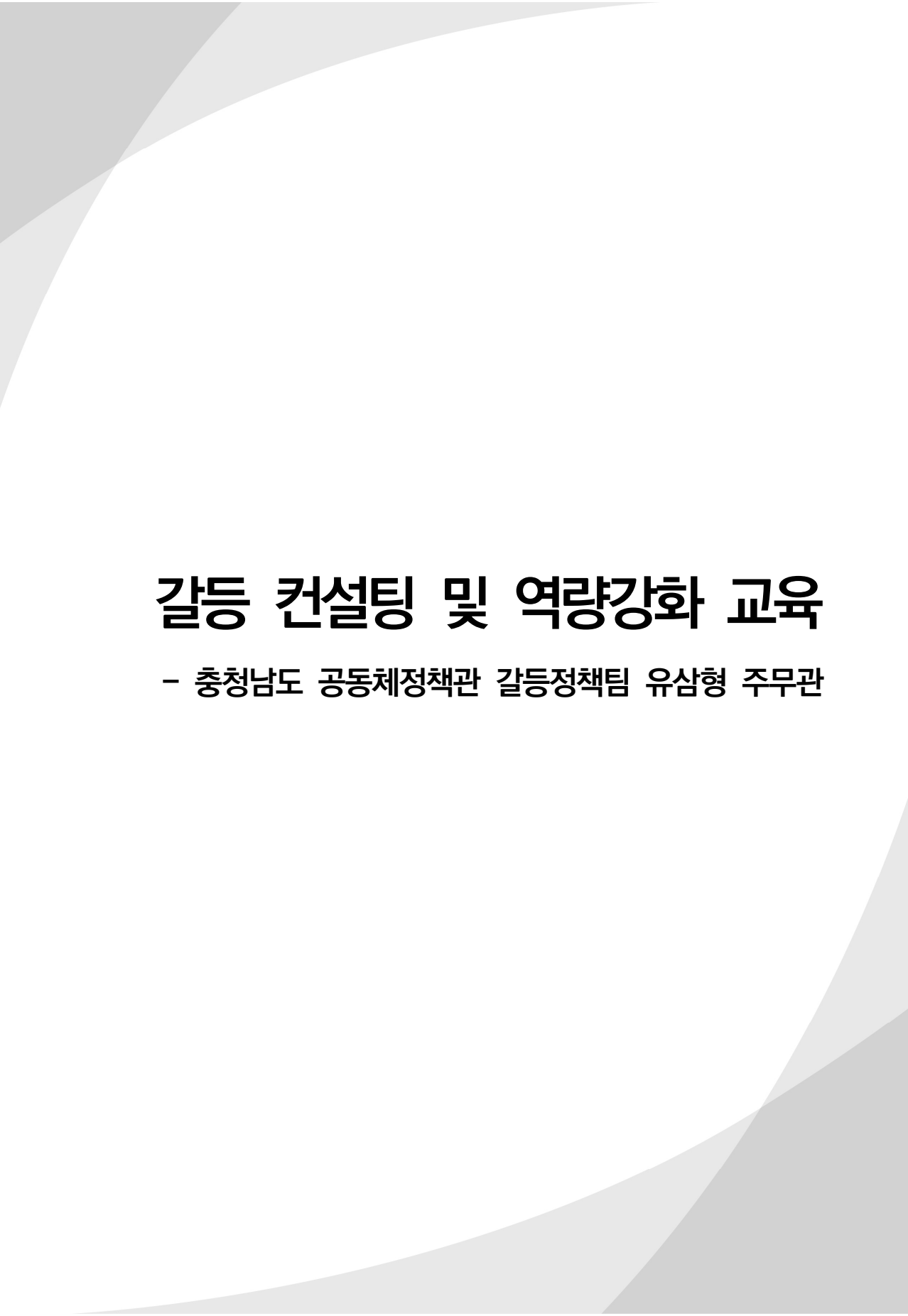
● 진 단 일 자 :

● 사업추진부서 :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여	부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30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함	존재하지 않음
	-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	그렇지 않음
3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외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사업 추진(진행)시()	그렇지 않음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상태는 어떠한가?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집단시위, 폭력 () 소송 () 항의성 방문 ()	공문 통한 민원제기 ()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기타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됨	보도되지 않음
6	보도된 매체 수	3개 이상	2개 이하
7	보도된 횟수	3회 이상	2회 이하
8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	없음	있음
9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함	필요 없음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11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다.	필요함	필요 없음
12	갈등해결에 충청남도를 제외한 2개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함	필요 없음
계			

※ 1등급(9개 이상 체크), 2등급(6개 이상 체크), 3등급(6개 미만 체크)

→ 1,2등급 확정시 갈등관리 목록 포함 관리



갈등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갈등정책팀 유삼형 주무관



충청남도 공공갈등 정책과 역량강화 교육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갈등정책팀

I. 공공갈등의 이해

✓ 공무원이 갈등에 빠지면?(1)

㉠ (갈등 프레임) 공공갈등은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 ① 서로 대립적인 2개 이상의 대안이,
- ② 서로 충돌하여 양보·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 ③ 어느 대안을 선택하든 다른 대안의 희생이 불가피하여 비판·비난 정도가 줄어들지 않으며,
- ④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발생

㉡ (딜레마 상황) 공공갈등에 직면한 결정권자(공직자)는

- ㉠ 각각의 대안을 지지하는 세력(이해관계자) 사이에서,
- ㉡ 모든 세력을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없으며,
- ㉢ 그 중 한 세력을 지지하기도 곤란하지만,
- ㉣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결정을 보류·회피 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짐

※ 딜레마(dilemma) : 두 개의 판단 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결정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

3

✓ 공무원이 갈등에 빠지면?(2)

㉠ (회피 유형) 갈등 상황은 사업 추진을 지연시켜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의 실적(성과)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

- ㉠ 공개거부(은폐) ㉡ 소통회피(차단) ㉢ 공정성 포기(편향)
- ㉣ 여론동원(조작) ㉤ 책임 떠넘기기(회피) 등을 유발

㉡ (갈등 심화) 공공기관(공직자)가 위의 회피 유형을 보이며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이해관계자(세력)들의 경쟁심리를 자극하고 불안감을 증폭시켜 합리적·이성적 논리 대결에서 감정적·적대적 공격과 응징으로 변질



화유기 17화



다크 나이트(The Dark Knight, 2008)

4

✓ 공무원이 갈등에 빠지면?(3)

① (패러다임 변화) 최근 공공갈등 관리방향은

“갈등 발생을 문제 삼지 않고, 갈등 대처에 적극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 과
“선제적 대응을 통한 사전 예방”

➤ 갈등총괄부서와 사업부서 협업으로 조기 대응하여 행정 신뢰 향상

② (대응 방향) 대외적으로 대안이 수렴되고 정보가 공개되는 민주주의 강화, 대내적으로 부서 간 경쟁·비판 보장과 종합적 총괄 대응이 요구



5

1. 갈등의 개념

- ✓ 어 원 적

 - 참(葛)과 등나무(藤)가 서로복잡하게뒤얽혀 있는 상태
- ✓ 법 적

 - 공공정책(법령의제정·개정·각종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 ✓ 심리학적

 - 한 개인이 동일한 시점에서 둘 혹은, 그 이상의 상호배타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부여 되는 상황
- ✓ 경영학적

 - 희소자원이나 상충적인 목표나 가치등의배분과 관련하여 개인, 집단, 조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불일치 현상 혹은 경쟁적 상호작용
- ✓ 행정학적

 - 상호의존적인 관련 당사자간의 관계에서 일정한요인에서 비롯된현상으로 자각·인지에 의한 심리적 메커니즘과 대립적 행동을 내포하는 동태적 과정
- ✓ 정치학적

 - 목표의 상충으로 인하여 표출된 충돌·경쟁·논쟁·긴장 등의 현상

6

2.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키워드

대립



해소



협력

- ✔ **분쟁** : 복수의 행동주체간의 갈등으로 어떤 쟁점에 관해 힘(무력)에 의한 장애가 형성된 상태
- ✔ **경쟁** : 각 당사자의 활동이 상호의존관계에 있지 않고 상대방의 활동에 간섭하면서 힘과 논리로 겨루기만 하는 것
- ✔ **타협** : 이해관계자 둘이 서로 좋도록 절충하여 합의함, 또는 그 합의의 과정이나 결과
- ✔ **협상** : 둘 이상의 조직이 재화나 용역의 교환에 관련하여 직접 교섭하고 타협하는 것
- ✔ **협동** : 자신과 상대방의 공동 노력의 과정이나 결과에 만족하는 것
- ✔ **상호이익의 실현 및 증진**
- ✔ **상호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한 자원의 교환**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평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3. 공공갈등의 이해

✔ 민원과 갈등

✔ 민원과 갈등의 구분

구분		내용	근거법령
일반민원	법정민원	①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신청 ②장부 대장 등에 등록·등재 신청, 신고 ③특정사실, 법률관계 확인 증명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997년 제정)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	상담·설명, 불편사항 등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를 요구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①위법·부당, ②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포함), ③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02년 제정)
공공갈등		공공정책(법령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 수립·추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2007년 제정)

✓ 민원과 갈등

- ✓ 민원은 법령이나 행정 시스템에서 관리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 고충민원의 경우, 청문·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절차가 법률로 규정
- ✓ 갈등은 ‘심리적·물리적인 충돌 및 격동하는 상태’로 법령이나 행정 시스템 범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대부분
 - 공직자의 업무권한 및 재량권을 넘어 복합적으로 발생, 초기대처가 어려움
 - 갈등 발생을 성과 저하 및 업무능력 없음으로 보는 공직사회 분위기 개선 필요
- ✓ 민원이 반복(증폭)되거나 갈등 발생이 예견될 경우, 선제적 갈등 예방 조치 필요
 - 갈등 사전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부서간 협업 강화를 위해, 갈등관리팀을 갈등정책팀으로 전환(2018.1.) 및 예방시책 추진

9

4. 공공갈등의 유형

✓ 갈등의 유형(1)

구분	정의	해결방안(예시)
✓ 사실(신뢰) 갈등	사건, 정보(자료), 언행에 대한 사실해석의 차이에서 발생	객관적 자료나 제3자 개입을 통한 사실 증명(팩트체크), 공동조사 등
✓ 이익(배분) 갈등	한정된 자원이나 지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	공정한 배분시스템, 합리적 의사결정 제도 도입 운영 등
✓ 관계(소통) 갈등	불신, 오해, 편견 등 상호관계 이상으로 발생	정보(자료)제공, 의사소통 통로 확보 및 확대, 관계전환 조정
가치(신념) 갈등	가치관, 신념, 세대, 이념, 종교,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	의견수렴,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위한 공론장 형성, 공동연구, 학습 등 상호 교류 증진
정체성(존재) 갈등	개인(집단)의 정체성을 위도적 훼손하거나 강요로 발생	
구조적 갈등	사회, 정치, 경제 구조와 왜곡된 제도, 관행, 관습 등으로 발생	법제도 개선, 정부혁신, 새로운 문화창출 위한 교육, 훈련

10

5. 공공갈등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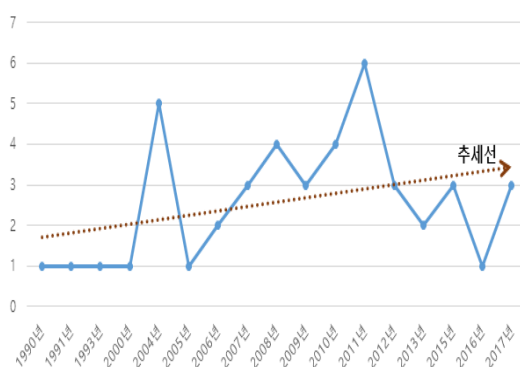
✓ 갈등의 진행

- ✓ (갈등의 변질)** 갈등은 이해관계자(주민)의 사실관계 확인(질의민원)에서 시작
 - 최초 정보공개 요구(사실갈등)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관계갈등으로 확대
 - 갈등이 장기화되면, 갈등원인 해결보다 불신, 오해, 편견을 심리적 내면화하면서 가치갈등으로 변질
- ✓ (갈등의 복잡화)** 갈등은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
 - 복잡한 갈등 대응은 “갈등의 핵심 유형과 부차적 유형 분석” 이 필요
- ✓ (갈등의 상향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위기관이나 고위인사로 집중
 - 실무(권한)부서나 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해관계자는
기초→광역 →정부나 국회 → 청와대로 문제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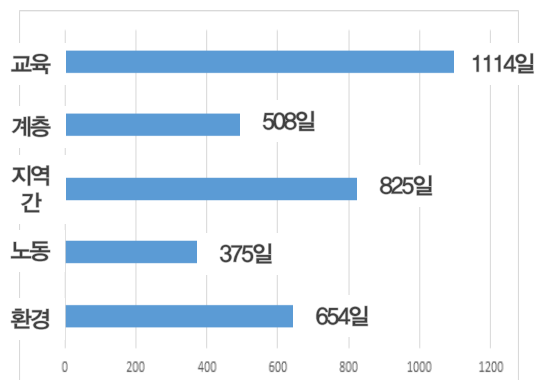
11

6. 공공갈등의 현실

✓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200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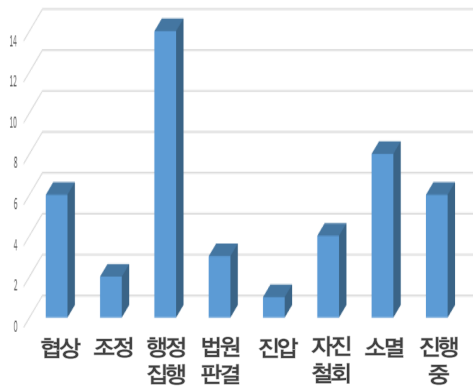
㉠ 연도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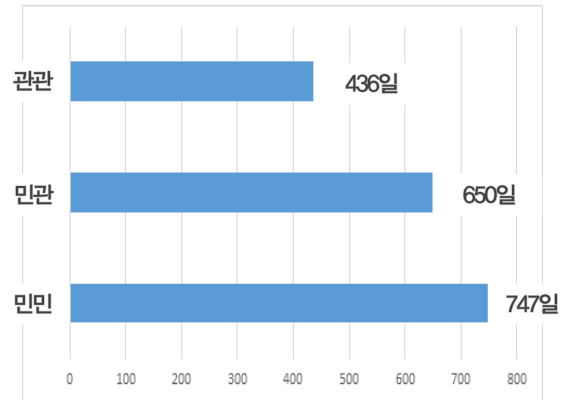
㉡ 유형별 지속 일수

12

①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200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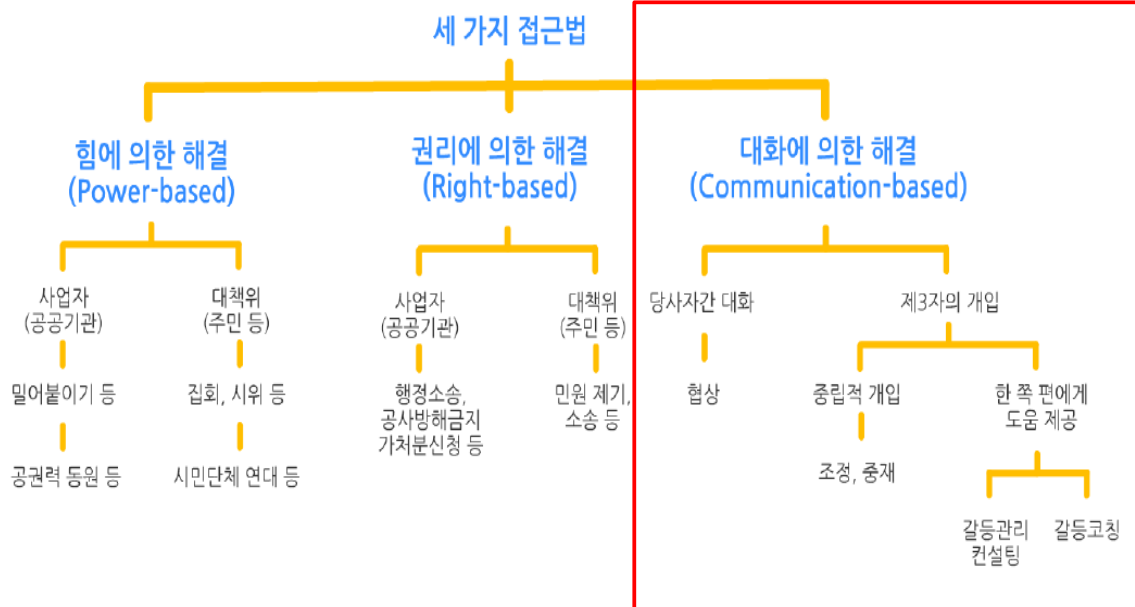
㉠ 종결 유형별 비율



㉡ 대립 유형별 자속일수

13

7. 공공갈등의 대응 방안



자료: 전형준(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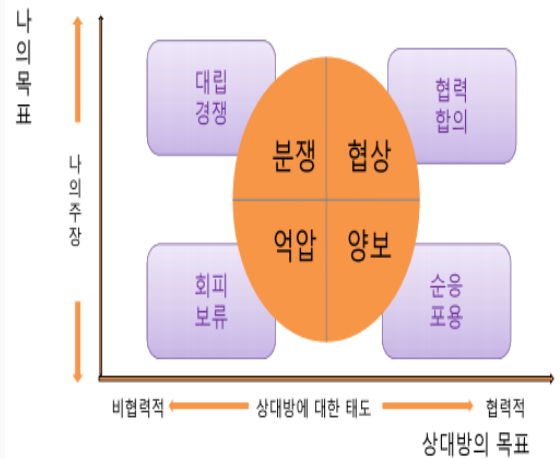
14

2. 공공갈등의 대응방안

① I/R/P (Interest, Right, Power) Model



② 갈등해결의 방법 - 행태적 차원



자료: 서정철(한국갈등학회 총무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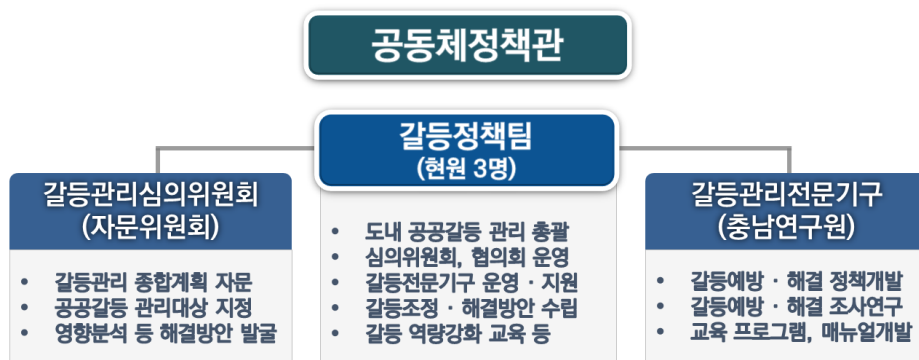
15

II. 충청남도 공공갈등 정책

1. 충청남도 공공갈등 정책

✓ 갈등정책

- 근거 법령
 -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10년 제정, 2014년 전부개정)
- 연혁
 - 2015. 1. 갈등관리 전담부서(갈등관리팀) 신설
 - 2018. 1. 갈등정책 총괄부서(갈등정책팀) 변경
- 갈등정책 운영 조직도



17

✓ 갈등관리 관점의 변화



참고자료: 국무조정실(2013)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18

✓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키워드

대립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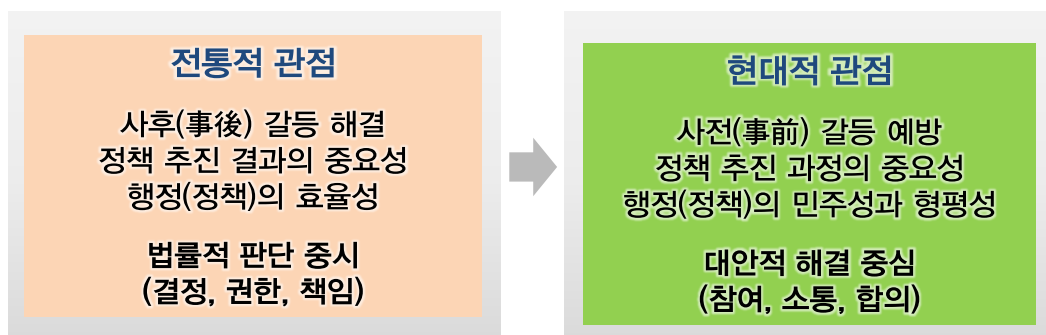
협력

- ✓ **분쟁** : 복수의 행동주체간의 갈등으로 어떤 쟁점에 관해 힘(무력)에 의한 장애가 형성된 상태
- ✓ **경쟁** : 각 당사자의 활동이 상호의존관계에 있지 않고 상대방의 활동에 간섭하면서 힘과 논리로 겨루기만 하는 것
- ✓ **타협** : 이해관계자 둘이 서로 좋도록 절충하여 합의함, 또는 그 합의의 과정이나 결과
- ✓ **협상** : 둘 이상의 조직이 재화나 용역의 교환에 관련하여 직접 교섭하고 타협하는 것
- ✓ **협동** : 자신과 상대방의 공동 노력의 과정이나 결과에 만족하는 것
- ✓ **상호이익의 실현 및 증진**
- ✓ **상호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한 자원의 교환**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평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1. 충청남도 공공갈등 정책

① 갈등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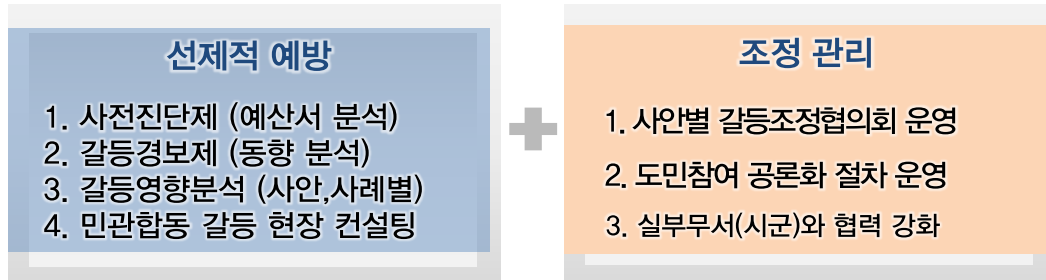


②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 및 조정관리체계 구축

- 갈등예방을 위한 선제적 예방정책 및 합리적 조정관리 체계 구축
- 공동체 상생 및 민관협치 기반의 사회적 합의 시스템 도입 및 운영
- ✓ 공공정책 및 도정 신뢰 향상을 위한 갈등 조정자 역할 정립

1. 충청남도 공공갈등 정책

⑦ 기본방향



⑧ 반성과 대안

- 국책사업 위주의 현안 발생으로 道 차원의 갈등 해결이 곤란
- 공무원 대상 갈등 인식 개선 및 갈등 역량 교육 부재
- 관련 부서 간 협력 부진 및 갈등 상황 회피 분위기 극복 필요
- ✓ **갈등 발생을 문제 삼지 않고, 갈등 대처에 적극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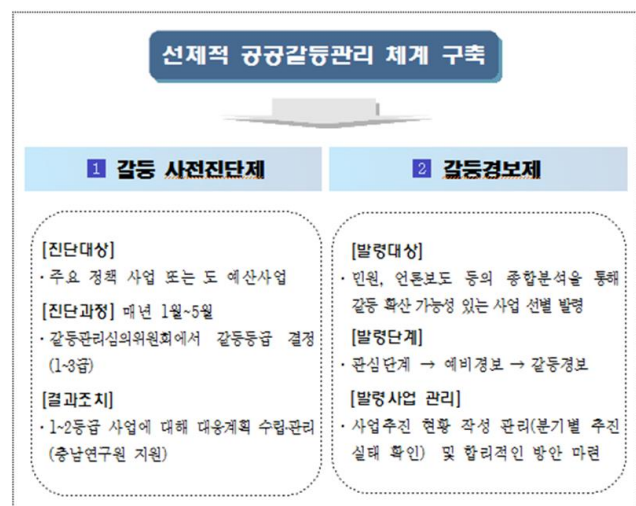
1. 충청남도 공공갈등 정책

✓ 선제적 갈등 예방 공공갈등관리 체계

- ①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집행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② 추진배경

- ✓ 갈등 발생 전, 선제적 분석을 통한 사전 대응 시스템 구축
- ✓ 갈등 발생 초기에 대상을 명확화하여 전방위적 대응
- ✓ 갈등 해결을 위한 상황별 맞춤형 갈등 조정 역할 필요



22

가.공공갈등 사전진단제

㉠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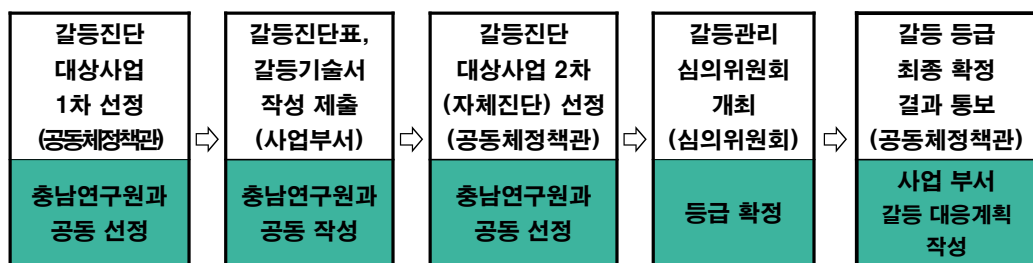
- 도정 주요 정책(사업) 대상 추진 선제적 갈등 대응 방안 마련
- 적극적 사전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저감 및 행정 신뢰 향상
- ✔ 주요사업 사전 갈등진단으로 선제적 갈등 예방 체계 구축

㉠ 사전진단제 진단대상

- ✔ 道 추진 단위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및 주요 승인 사업
- ✔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
 - ※ 투자심사 대상 사업 : 사업규모 50억원 이상 사업
- ✔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정 및 개정 사업

23

㉠ 사전진단제 진단절차



㉠ 사전진단제 결정 방법 및 갈등 대응 계획 수립

- ✔ 1등급 : 道 차원의 접근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중점관리대상)
- ✔ 2등급 : 사업부서 및 공동체새마을정책과의 협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
(부서자체관리 대상)
- ✔ 3등급 :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
- ✔ 갈등 대응계획 수립 대상사업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1등급 및 2등급으로 결정된 사업
- ✔ 갈등 대응계획 수립 추진방법 : 갈등영향분석(충남연구원)을 통해 공공갈등 대응계획 마련

24

나.공공갈등 경보제

㉠ 갈등경보제

- ✔ 민원실태, 언론동향 등을 파악하여 갈등 징후 탐색 체계 구축
- ✔ 갈등 징후 탐색을 위한 갈등 경보 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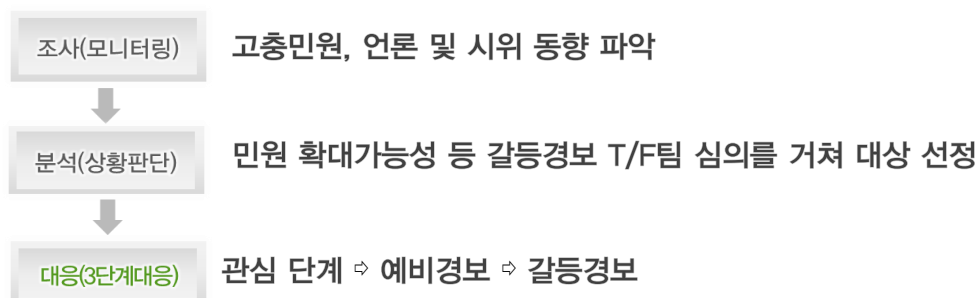
★ 갈등 초기 해결을 위한 행정 내부 협조(협업) 및 민관협력 강화

※ 공공갈등 패턴 분석

- ✔ (갈등초기) 개인민원 ⇨ (갈등증폭) 집단시위, 단체 · 위원회로 확대 제기
- ✔ 초기에는 일반민원에서 갈등 진행 후 고충민원으로 관리
- ✔ 민원 접수 및 언론 보도 증가 ⇨ 특정 패턴(키워드) 형성

25

㉠ 업무 흐름도



㉠ 단계별 대응 방안(3단계)

- ✔ **관심단계** : 갈등예방 활동 수행
 - (갈등정책팀) 해당 부서에 메일링(전자우편 등) 알림
 - (사업부서) 민원 내용 분석 및 갈등해소 방안 준비
- ✔ **예비경보** : 갈등요인 제거 및 갈등방지 대책 수립
 - (갈등정책팀) 해당부서에 공문 통지
 - (사업부서) 민원당사자와 면담 및 주민 사업설명 등 갈등해결방안마련
- ✔ **갈등경보** : 갈등조정활동 수행
 - (갈등정책팀) 갈등경보T/F팀 운영, 갈등 대응방향 검토 및 대안 도출, 갈등조정지원(조정협의회 구성, 전문가 지원)
 - (사업부서) 갈등 대응 방향 마련 및 유관기관간 대응 협조 체계 강화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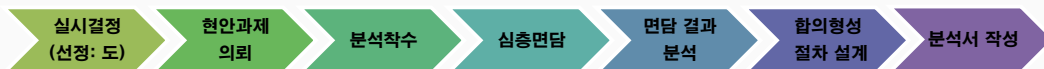
다. 공공갈등 현장 컨설팅

㉠ 갈등영향분석

- ✓ 도내 주요갈등 현안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
 - 분석계획 : 연 2건 이상
 - 관련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7조
 - 분석기관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道 갈등관리 전문기구)
 - 분석내용 : 갈등의 요인과 유형, 쟁점 및 환경분석, 정책적 제언 및 기술 검토 등

㉡ 분석절차

- ✓ 영향분석 대상 선정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분석 대상 심의 의결



27

다. 공공갈등 현장 컨설팅

㉠ 현장컨설팅

- ✓ 도내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과 합의 형성 촉진을 위한 현장컨설팅 실시
 - ※ 공공갈등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자문 기능 강화
- ✓ 쟁점사항을 사전에 파악, 민원 최소화 및 정책집행 실효성 확보

㉡ 표준절차

[1단계] 대상사업 선정	◦도, 시·군 정책사업 등 공공갈등 현장컨설팅 대상 선정(수시)
[2단계] 갈등요인 분석	◦공공갈등 위험요인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갈등정책팀) - 해당 시·군, 충남연구원 전문가 등과 사전 검토 회의
[3단계] 현장컨설팅 실시	◦중립적인 제3자의 갈등조정 전문가 등 현장컨설팅 실시 - 갈등 유형에 따라 조정 전문가를 선정하여 대화를 통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 지원
[4단계] 해소 방안 수립	◦현장컨설팅을 통한 공공갈등 해소방안 수립 - 갈등조정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사안별 조정협의회 구성·운영으로 갈등해소 방안 마련
[5단계] 모니터링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갈등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신속한 사후관리 및 시의적절한 갈등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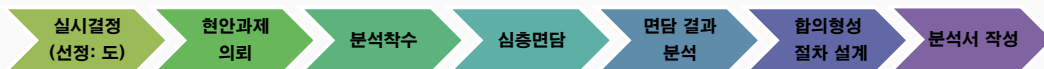
라. 갈등 영향 분석

㉠ 갈등영향분석

- ✓ 도내 주요갈등 현안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
 - 분석계획 : 연 2건 이상
 - 관련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7조
 - 분석기관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道 갈등관리 전문기구)
 - 분석내용 : 갈등의 요인과 유형, 쟁점 및 환경분석, 정책적 제언 및 기술 검토 등

㉡ 분석절차

- ✓ 영향분석 대상 선정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분석 대상 심의 의결



29

㉠ 갈등영향분석 활용방안

- ✓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초기단계의 지침서 활용
- ✓ 사실관계 파악을 통한 갈등예방 및 해결의 합의형성 절차 설계
- ✓ 관련 부서와 분석 보고서를 공유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
- ✓ 갈등의 예방 · 해결을 위한 조사 · 연구 DB 구축 및 활용

30

2. 공공갈등의 대응방안(1)

✓ 갈등 해결의 4원칙



사람과 문제를 분리



겉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원하는 것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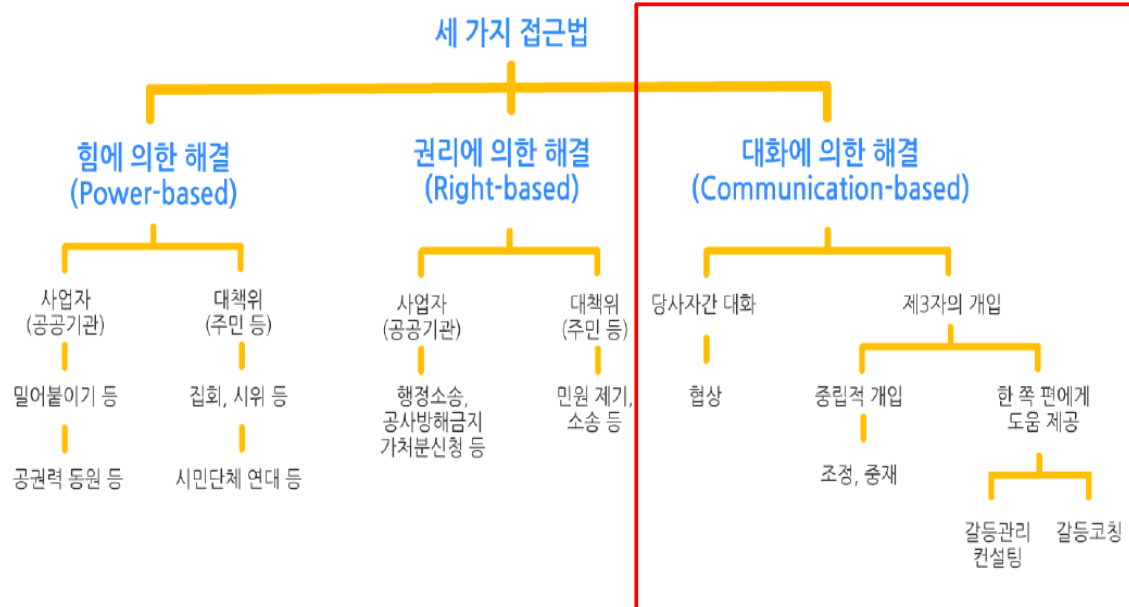
상생적이고 호혜적인
대안 창출



객관적 기준 적용 및
합리적 대안 선택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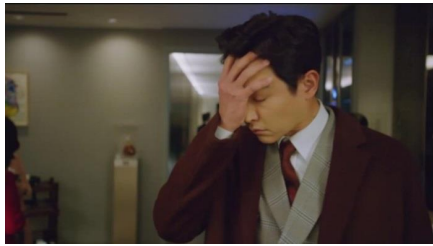
2. 공공갈등의 대응방안(2)



자료: 전형준(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32

2. 공공갈등의 대응방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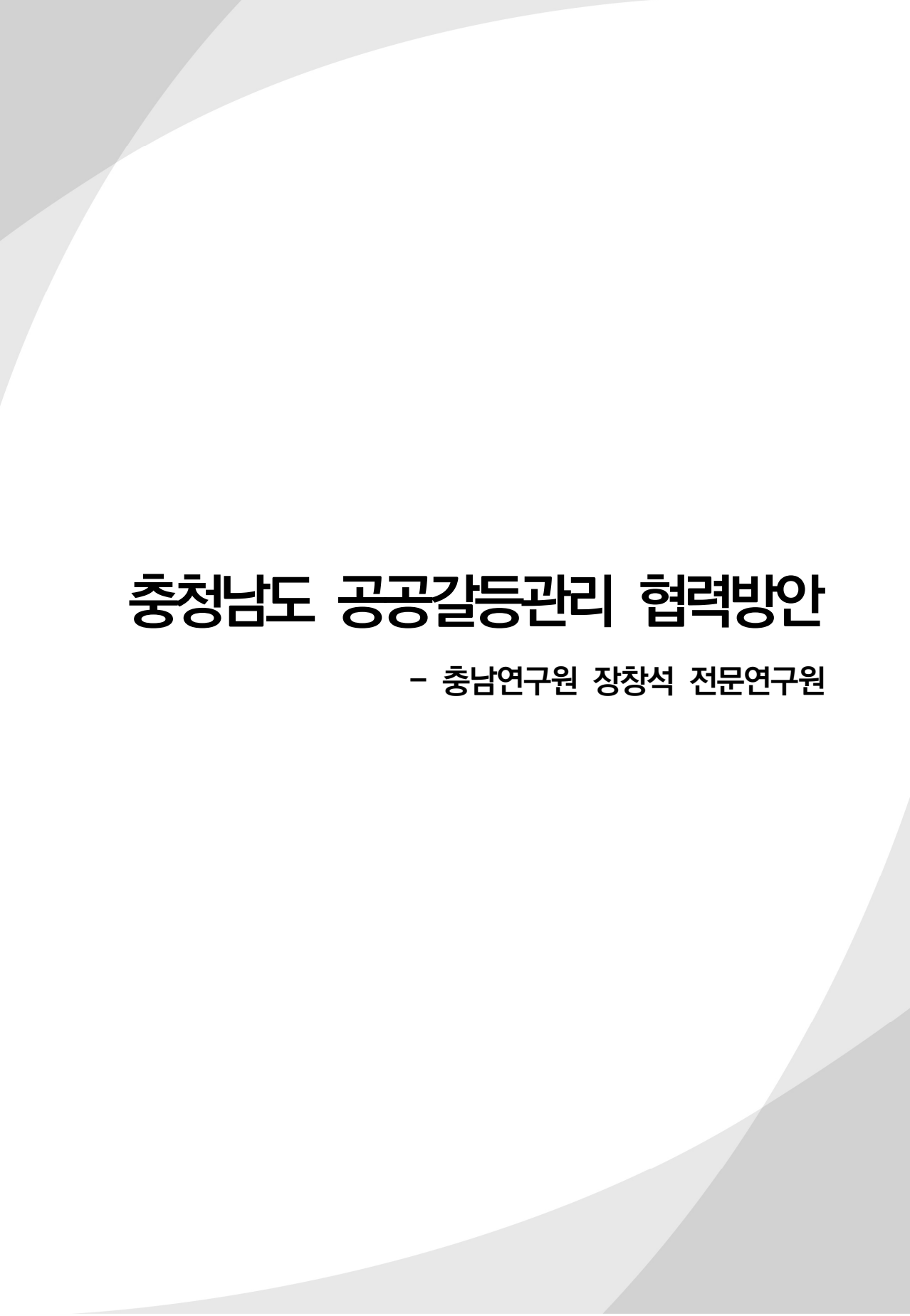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싸우더라도 만나고,



오직 대화, 오직 대화, 그래서 평화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협력방안

-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문연구원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협력방안



2019. 7. 25.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협력방안

목 차



I. 충청남도 현황



II. 충청남도
갈등관리
체계



III.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



IV. 효율적
관리방안



V. 2019 중점
추진 계획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협력방안

충청남도 현황

1. 충청남도 현황

갈등관리 제도

- ㉠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2010. 11. : 조례 제정
 - 2014. 12. : 전부 개정
- ㉡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적 관리 → 사전적 예방으로의 갈등관리체계 구축
가용한 여러 시스템들을 활용하여 도내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노력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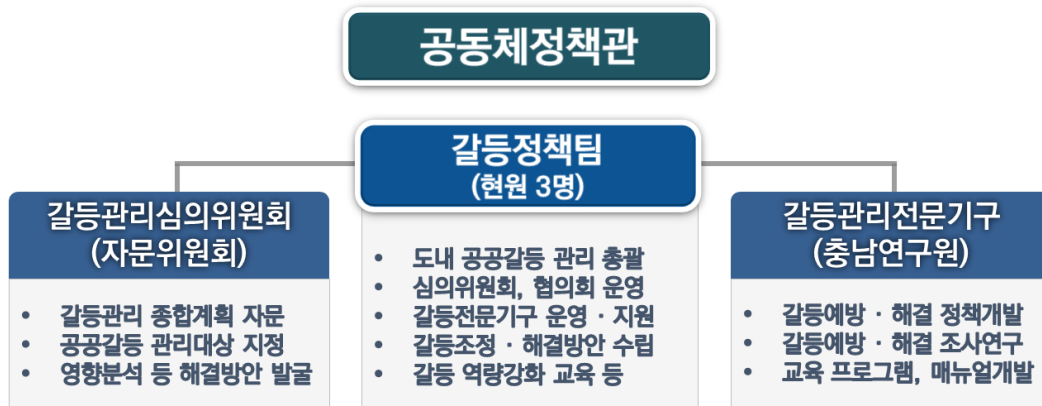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 지정서를 교부한다.

1. 충청남도 현황

갈등관리 조직

1) 행정 조직

- ☞ 행정부지사 직속 공동체정책관실 갈등정책팀(현원 3명) 소관업무로 다룸
- ☞ 주요업무로는 도내 공공갈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갈등전문기구의 운영과 지원 등을 추진함



5

1. 충청남도 현황

2)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 2011년 1기를 시작으로 2019년 5기 운영 중

3) 충청남도 갈등조정협의회

- ☞ 전담조직 신설 이전에는 갈등 발생시 단순 민원으로 처리되거나 개별 사업부서에서 전담하던 관리방식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



6

1. 충청남도 현황

4)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 ㄱ 2015년 5월부터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도내 갈등관리와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 중
- ㄴ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통하여 갈등예방 및 해결의 절차설계, 갈등영향분석, 현장 지원, 교육 등이 이루어짐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갈등매뉴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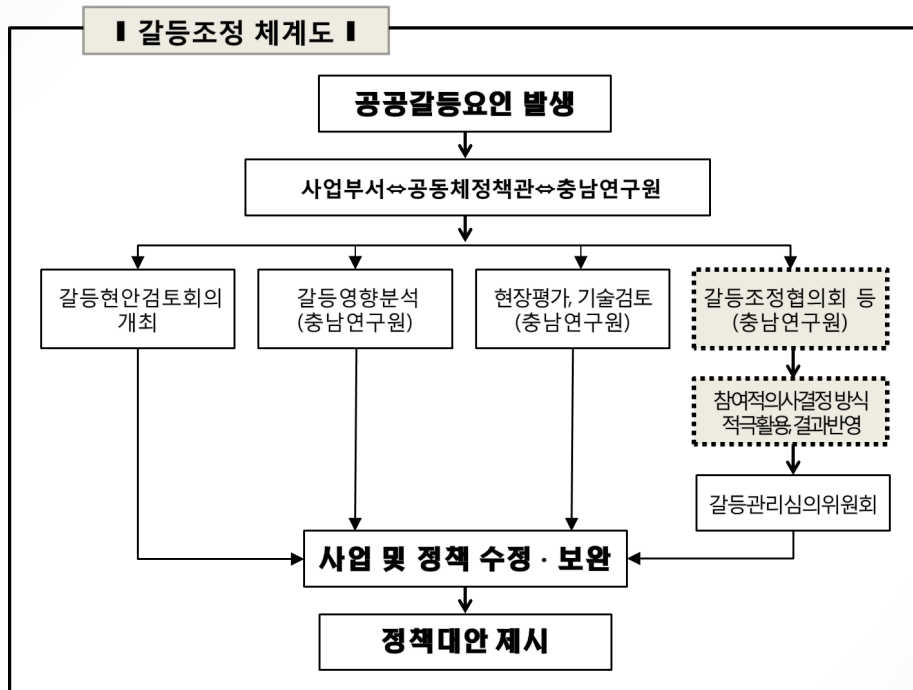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협력방안

충청남도 갈등관리 체계

2. 충청남도 갈등관리 체계

갈등조정 체계도



9

2. 충청남도 갈등관리 체계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1) 갈등관리 주요업무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한 해결방안 제안

갈등현장에 대한 갈등조정 · 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갈등관리 교육 · 홍보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 · 보급

기타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2. 충청남도 갈등관리 체계

2) 갈등관리 주요 추진 사업

㉠ 공공갈등영향분석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의 문제, 내·외부 환경 요인 분석

㉡ 갈등관리조정협의회 운영

- 공공갈등 당사자 간 조정·의지가 있는 사업 선정
- 20명 이내로 행정기관, 당사자, 전문가 등 참여

㉢ 갈등관리 맞춤형 교육

- 지역주민·사회단체, 도·시군 공무원 등 대상
-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인식전환 교육(워크숍, 위탁교육)

㉣ 공공갈등 사전 진단 연구

- 신규 공공정책 수립, 다수이용 공공정책, 선호시설 및 비선호 시설
- 면밀 검토 진단(정책 개요, 갈등 내용, 대응계획, 해결방안 등)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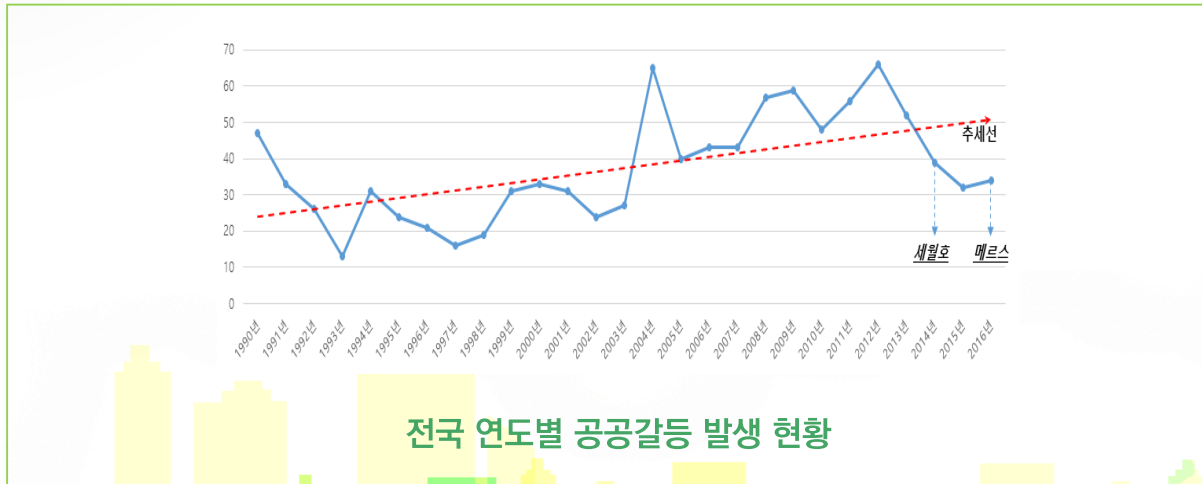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협력방안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

3.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

공공갈등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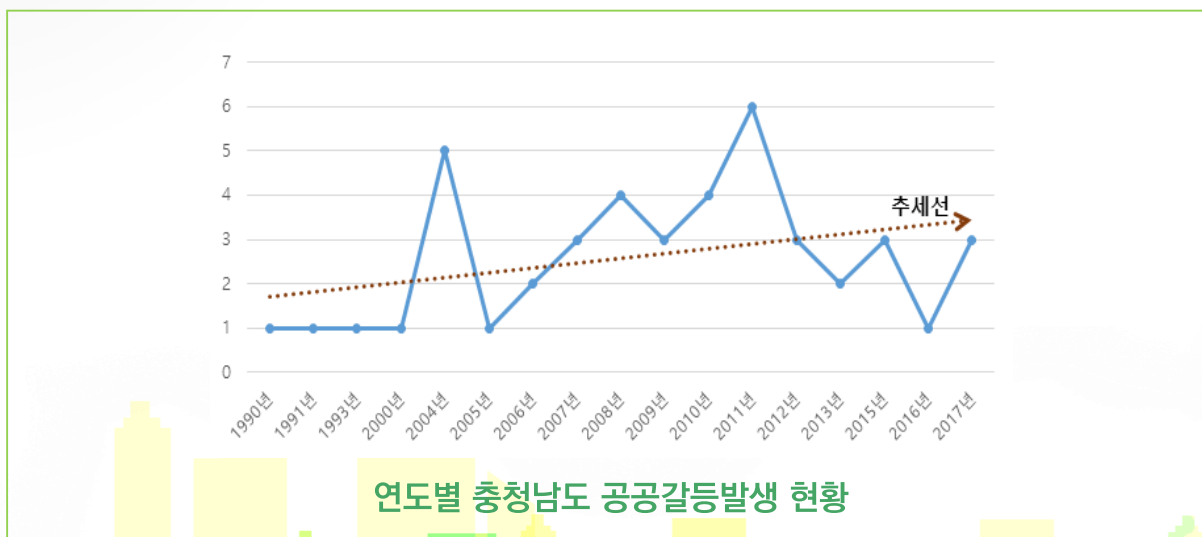
㉠ 1990년도부터 최근년도까지 살펴본 결과 공공갈등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13

3.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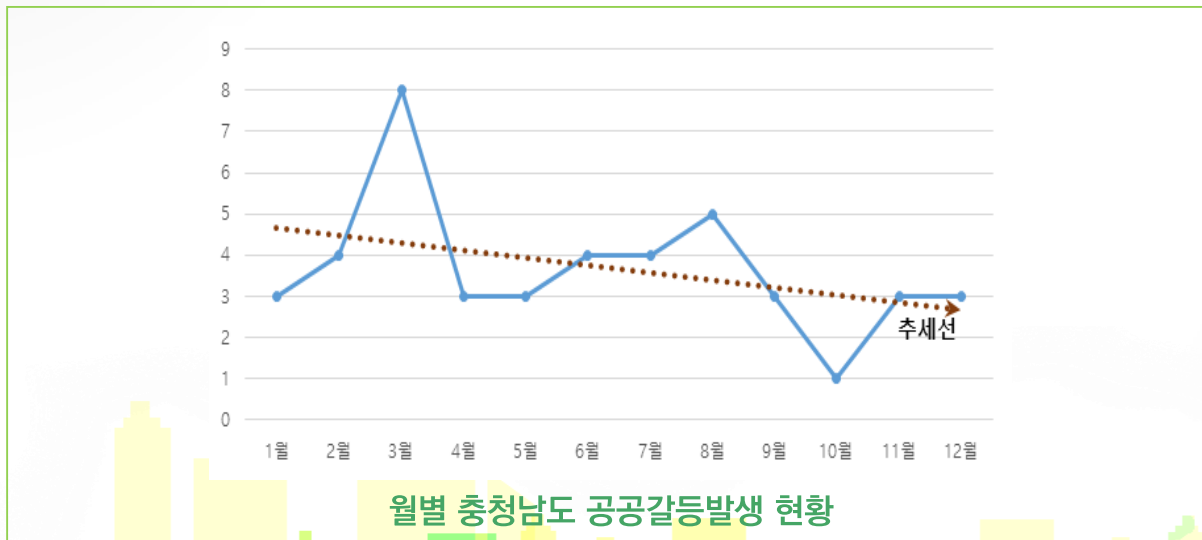
공공갈등 발생 현황



14

3.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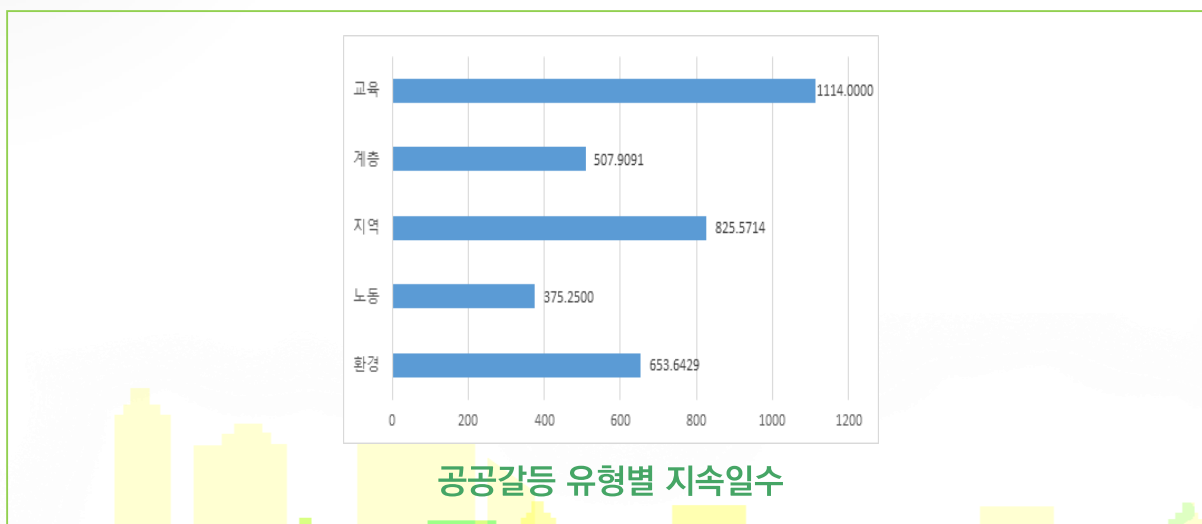
공공갈등 발생 현황



15

3.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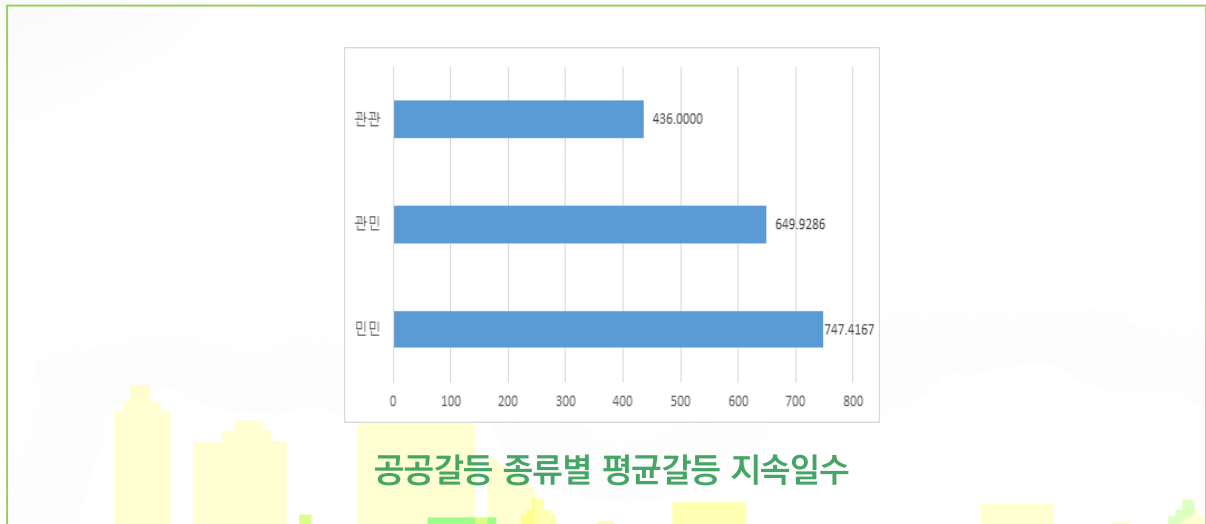
공공갈등 발생 현황



16

3.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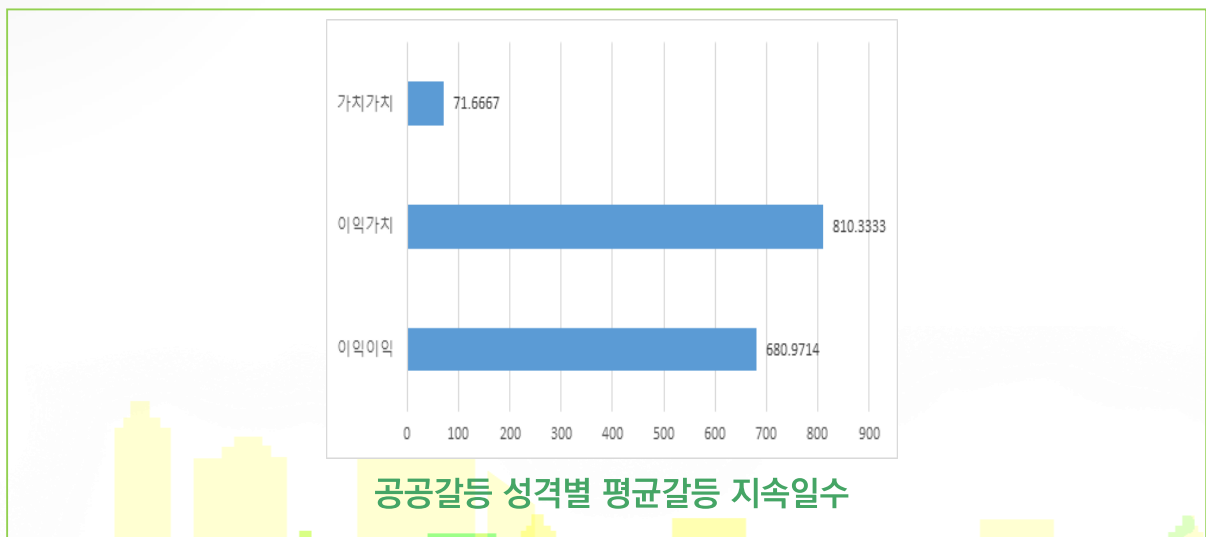
공공갈등 발생 현황



17

3.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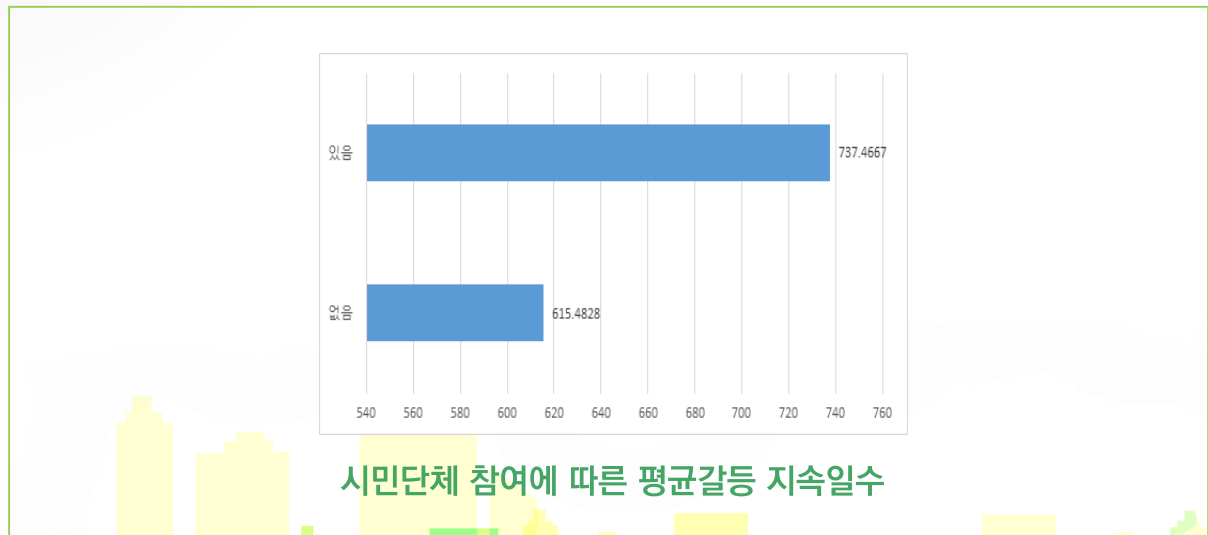
공공갈등 발생 현황



18

3.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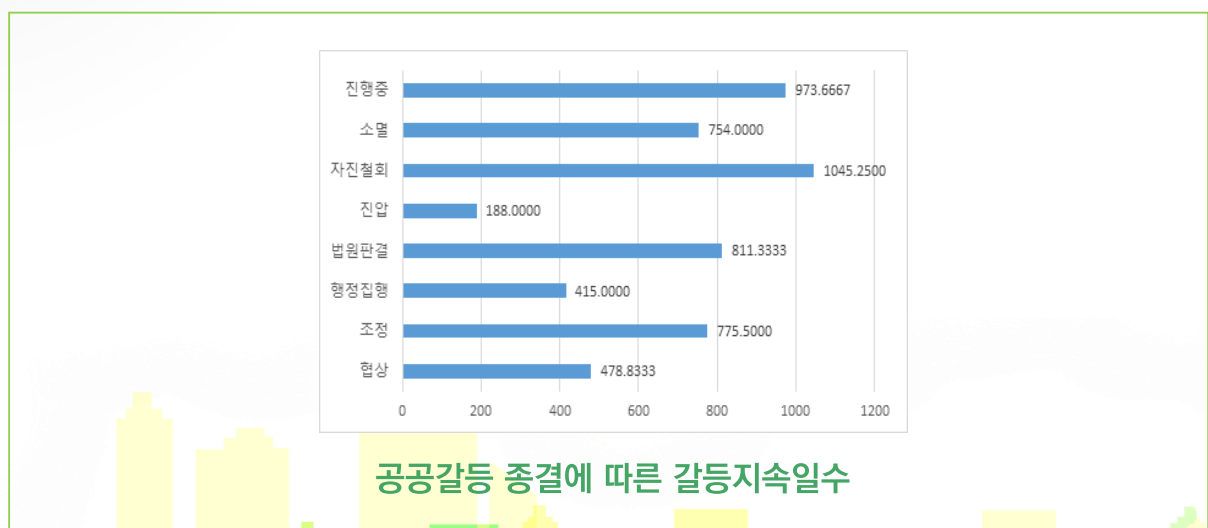
공공갈등 발생 현황



19

3.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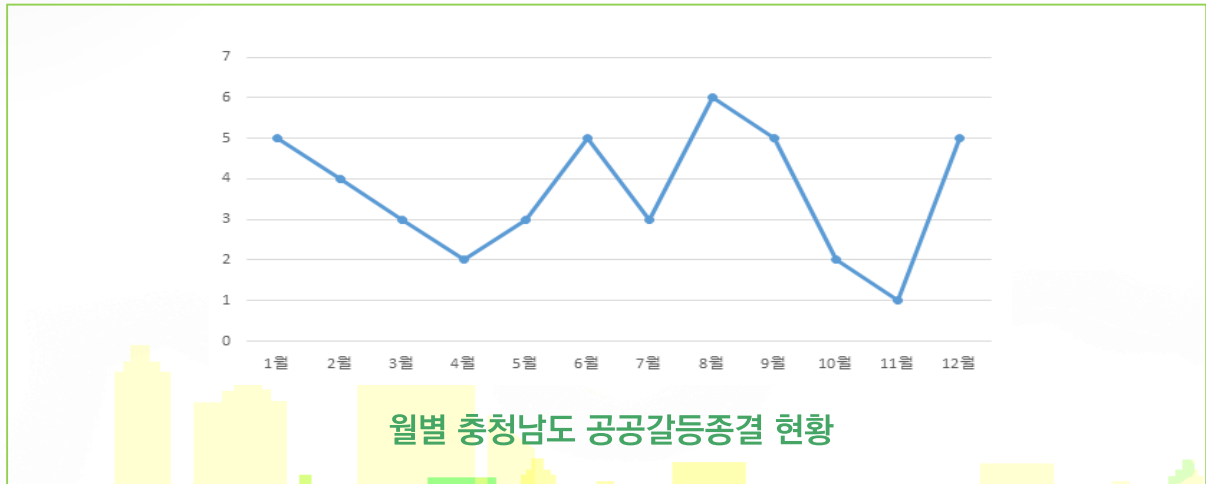
공공갈등 발생 현황



20

3. 충청남도 공공갈등 현황

공공갈등 종결 현황



21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협력방안

**효율적
관리방안**

4. 효율적 관리방안

제도적 측면

- ㉠ 자율적 협의기구의 활성화
 - 이해관계자들이 우선 사전협의를 통하여 갈등의 주요 쟁점과 원인, 대안을 바탕으로 객관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의 자율적 협의기구가 필요
- ㉡ 공공갈등관리 방향성 확립
 - 시스템만을 믿고 갈등관리를 하기보다는 갈등예방과 해결의 절차 설계에 방향성을 둔 맞춤형 대응 방향의 구축이 필요

운영적 측면

- ㉠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도화
 - 제도의 마련으로 인하여 공공갈등관리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행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 ㉡ 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
 - 정책초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가 정책의 추진제한 보다는 효율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

23

4. 효율적 관리방안

역량적 측면

- ㉠ 참여집단(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
 - 참여집단(이해관계자)의 적극성과 전문성이 요구
- ㉡ 갈등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로 공공갈등 일반적 인식과 현안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조사됨
 - 인식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갈등교육과 그에 부합하는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함

환경적 측면

- ㉠ 공공갈등 사례의 축적
- ㉡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24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협력방안

2019 중점 추진 계획

5. 2019 중점 추진 계획

중점 추진 계획

- ㉠ 도, 시·군별 공공갈등관리 실태분석
 - 제도, 조직, 인력, 예산 등 자치단체별 실태분석
- ㉡ 효율적 공공갈등관리 방안 연구
 - 도, 시·군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실태분석을 통한 효율적 갈등관리 방안 제안
- ㉢ 도, 시·군 공공갈등 현안 연구
 - 부여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갈등영향분석
 - 충청남도 축산시설 악취 갈등영향분석





학 습

협력 방안 학습

- 시·군별 현안점검 및 개선 협력 방안

부 록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1-10 조례 제 3544호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 3915호

(전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도정 전반에 걸쳐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한다.
3.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2장 예방과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조정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5.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참여
7.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충청남도의회 의장 및 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경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 부서장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에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4조(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2. 전문가
3. 심의위원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갈등관리 전문기구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 “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2.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배포·활용
4.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7.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19조(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점검·평가 등) 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체계적 활동,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도지사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 및 갈등관리 전문기구와 그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blank, lined paper. It features approximately 20 evenly spaced horizontal grey lines across its entire width,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or drawing. The margins are consistent on all sides.